발 언 대

'94 가축인공수정사 보수교육을 받고

-축산법 개정을 바라며-

김 영 섭

1994년 6월 중순경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장 직인이 찍혀있는 보수교육통지서를 받았다.

배달증명을 요구하는 우편물이어서 강제성을 가지는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교육기간이 94년 7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으로 되어 있어서 넉넉한 마음으로 여러곳에 알아봤으나 93년도 6월에 개정되었다는 축산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수의사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경북 도청축산과 수의계에 문의했더니 반드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유선상으로 긴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 민원서류형식을 빌려서 내가 살고 있는 칠곡군수 앞으로 질의를 했다. 인공수정사 업무와 보수교육에 관한 법률조문과 해설을 요청했다. 3일후에 받아본 회신에는 보수교육이 의무교육이며 미필시에는 면허정지 내지 취소까지도 가능케 되어 있었다. 또 수정사 업무중에는 수정란이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놀랍고 답답했다. 수의사들은 도대체 무엇하고 있었는가? 이런 법이 어디 있는가?

나의 실망은 말할 수 없이 컸다. 일반수정사와 수의사면허를 가진 수정사를 함께 소집하여 보수교육을 한 바 있는 몇년전 일이 생각났다. 그게 아마 1990년도 쯤이라 생각된다. 경북도청에서 주관한 교육이었다고 생각된다. 경북 포항시내에서다.

어떤 강사는 이런 강의를 했다. 「힘이 없는 정충은 자궁내에서 백혈구가 잡아 먹어버린다」. 이렇게 엉터리 강의를 하는 멍텅구리 박사가 있었다. 또 다음과 같이 무식한 강의를 한 공무원도 있었다.

「정액공급자인 수정사들은 반드시 24호 서식에 따르는 대장을 비치하고 철저히 기재하라 이걸 아니해서 처벌받은 사람도 있으니 유념하라 했다.」

이때 더이상 참을 수 없었던 필자가 즉석에서 면박을 주었다. 우리 일선 수정사들은 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정액공급자가 아니요 하고 망신을 주었다. 그당시 분위기만 좋았어도 이렇게 까지는 하지 않았을께다. 조금 늦게 입장한 어느 50대 수의사를 향해서 임석한 젊은 도청공무원이 밖으로 나가라고 내좇는 발언이 있었고 또 어느 수의사가 교육내용에 대해 불평을 말하자 듣기싫으면 나가라고도 했다. 그래서 발끈한 필자가 엉터리 강사 얼굴에 분칠을 해준 적이 있다. 수의사에게 의사대접, 학사대우를 아니해줄때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며 빵 두개, 우유 한봉지를 주면서 귀가시 점심으로 대용하라는 그당시의 보수교육 생각이 자꾸 떠올라서 며칠밤을 뜬눈으로 지새웠다. 가족회의를 열었다. 이번 통지받은 보수교육을 어떻게 할건가? 수의사로서 치욕적인 면이 있는데 그래도 가야하나? 가축인공수정업무를 그만둘까? 바른 소리를 자주 하니까 공수의자리도 내어놓은 결과이니 쥐죽은 듯이 몇년만 더하는 것이 좋겠다 등등 토론끝에 일단 보수교육에 참가하기로 작정했다. 교육시간표를 모르기 때문에 교육시작 시간인 7월 5일 오후 1시에 맞추어서 표를 끊고 돌아오는 것은 7월 6일 막차표를 예매했다. 서울 교육현장에 도착하니 커다란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 경북 칠곡군 왜관읍 대동가축병원

「94. 6. 23~9.15
'94 가축인공수정사 보수교육
주관 : 농림수산부
주최 : 축협중앙회
사단법인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교육일정은 7월 6일 12시 30분까지 였다. 7월 6일 막차 기차표를 예매해둔 내 입장에서는 억지관광시간이 풍부한 셈이었다. 백여명되는 피교육자의 대부분이 수정사들이고 수의사는 몇명 안되는 것 같았다. 교육내용을 살펴보니 놀라운 것이 있었다. 수정란이식에 대한 교육시간이 있었다. 수정사가 수정란을 이식한다는 것이 현실로 다가왔다. 칠곡군수의 회신문을 또다시 펼쳐 보았다.

「축산법 제 21조(가축인공수정소의 등록) ② 항
정액 또는 수정란을 암가축에 주입 또는 이식하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 수정소를 개설하고저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주입 다음에 "이식"이라는 낱말을 자연스럽게 삽입함으로써 수정사가 수정란이식을 할 수 있도록 합법화시켰으며 따라서 수정란이식이라는 동물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합법화시켜둔 것이다.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의 진료를 할 수 없다라는 수의사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악법이 성립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이러한 법률이 제정될 수 있었는가?

수정란이식이 동물진료행위임을 몰랐다고 변명할 것인가?

수정란이식을 위해서는 건강진단, 홀몬제 처방, 경막외마취, 수정란채취, 수정란이식, 수란우 임신진단 등등을 해야하며 이러한 의료행위들은 곧 동물진료행위이고 이러한 작업은 수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수의사법에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데도 함부로 법률을 제정했다는 말인가? 기가차고 허탈해진다.

도대체 모두들 무엇하고 있는가 말이다. 마땅히 축산법개정에 뜻을 모아야 겠다고 느껴「축산법 제 21조 2항에 단서를 붙여야 한다. "단 수의사가 아닌 수정사는 수정란 주입만을 할 수 있다."」

그다음 보수교육에 관한 법률조항의 개정이다.「축산법 제 17조 1항의 보수교육규정에도 단서를 붙여야 한다.

"단 수의사와 수정사는 분리교육하도록 하며 수의사의 인공수정업무 보수교육은 대한수의사회장에게 위탁한다."」

가축병원에서 인공수정사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똑같은 교재를 가지고 원장과 수정사가 교육을 받는 넌센스가 있어서도 안되며 수의사와 수의사가 아닌 자의 교재가 같을 수 없는 점을 감안한다면 보수교육 분리는 필연적일 것이다. 축산법 제 21조 2항과 제 17조 1항의 법개정을 위해서 대한수의사회 회원 전체의 의견이 집결되어야 하며 임원 여러분께서는 전심전력 최선을 다해서 수의사 권익신장에 이바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수정사보수교육이 아닌 수의사보수교육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지금 흩어지고 힘없는 수의사회를 생각하고 있다. 축산인들에게 그리고 축산계통 공무원들에게 질질끌려다니는 중소도시 임상수의사들을 생각해 본다. 가슴을 힘껏 내려쳐 본다.「내탓이요. 내탓이요. 내 큰 탓이로 소이다」.